

공유재산 구미소방서 지역대 신축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9. 6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고아읍의 인구증가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방력 추가 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나 현지역대는 조립식 건물로 노후하고 협소하여 구급차 등의 추가배치가 불가능하므로,
-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개정(2008.12.31)으로 지방자치단체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(청사, 관사등) 축조가 가능함으로써 공유재산에 고아지역대 이전 신축을 허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고아지역대 신축
 - 위 치 :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 706-52외 2필지(구미시 소유)
 - 규 모 : 부지 1,653㎡, 건축면적 600㎡(지상2층)
 - 사업기간 : 2009. ~ 2010.
 - 사업비 : 15억원(건축비 12, 소방차 2, 구급차 1)
 - 소방차 : 3대로 보강(2대 추가배치)

3. 관계 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3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9조

□ 고아 지역대 신축 부지

○ 위치도



○ 현황 사진



《관 계 법 령》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

제13조 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, 도랑·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. 다만,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

제9조 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